

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9년 9월 4일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)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의 전부개정 및 「지방자치단체
기금관리기본법」이 제정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 일
부개정(법률 제9632호, 2009. 4. 22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조 번
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
선·보완 하는 한편,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
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
-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
폐지하고,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
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→ 제142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 → 제34조

나. 기금의 조성재원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비함.(안 제3조)

다.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,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, 보조금 및 용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,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함.(안 제7조)

라.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.(안 제15조)
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56조 →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현재 기금 조성액은 얼마이며 관리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?	○현재 조성액은 원금 96억원, 이자수입 4억원으로 100억원이며,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음.
○기금의 사용처 및 향후 조성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?	○기금의 조성은 도시계획세를 포함해서 조성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 및 도시재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임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,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2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외”를 “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”로 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
2.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
3.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관리자의 부담금
4. 법 제82조제2항제2의2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30
5.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(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)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,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

6.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
 7.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
 8. 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용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
 9.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
 10.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
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·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납입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.

1.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용자
2.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
3.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용자
(다만,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4. 국고용자금에 대한 상환금
5.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,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(다만,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6.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, 기초조사, 연구, 측량,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
7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
제5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6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기금의심의)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

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3. 보조금 및 용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“40일전까지”를 “40일 전까지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80일이내”를 “80일 이내”로 하고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관련규정의 준용) ① 기금의 관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

기본법」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.

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6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66호
의결 년월일	2009. 9. 8. (제154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8. 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의 전부개정 및 「지방자치단체
기금관리기본법」이 제정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 일
부개정(법률 제9632호, 2009. 4. 22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조 번
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
선·보완 하는 한편,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
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
-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
폐지하고,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
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
비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→ 제142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 → 제34조

나. 기금의 조성재원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비함.(안 제3조)

다.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,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, 보조금 및 용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,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함.(안 제7조)

라.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.(안 제15조)
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56조 →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

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,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2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외”를 “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”로 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
2.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
3.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관리자의 부담금
4. 법 제82조제2항제2의2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30
5.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(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)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,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

6.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
 7.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
 8. 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용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
 9.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
 10.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
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·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납입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.

1.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용자
2.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
3.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용자
(다만,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4. 국고용자금에 대한 상환금
5.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,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(다만,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6.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, 기초조사, 연구, 측량,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
7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
제5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6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기금의심의)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

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3. 보조금 및 용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“40일전까지”를 “40일 전까지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80일이내”를 “80일 이내”로 하고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관련규정의 준용) ① 기금의 관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

기본법」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.

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6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,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·주거환경정비사업(이하 “정비사업”이라 한다)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천시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2조에 따라-----</p>
<p>제2조 (기금의 설치) ① (생략) ②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</p>
<p>제3조 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</p> <p>2.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</p> <p>2.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</p>

현행	개정안
<p>3. 법 제82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관리자의 부담금</p> <p>4. 법 제82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(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)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,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</p> <p>5.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</p> <p>6. 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용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</p> <p>7.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</p> <p>8. 그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·징수책임자는 지체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납입하여야 한다.</p>	<p>3.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관리자의 부담금</p> <p>4. 법 제82조제2항제2의2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30</p> <p>5.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(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)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,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</p> <p>6.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</p> <p>7.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</p> <p>8. 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용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</p> <p>9.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</p> <p>10.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·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납입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 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용자 2.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.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용자(다만,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) 4. 국고용자금에 대한 상환금 5.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,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(다만,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) 6.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, 기초조사, 연구, 측량,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7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용자 2.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.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용자(다만,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4. 국고용자금에 대한 상환금 5.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,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(다만,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6.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, 기초조사, 연구, 측량,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7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<p>제5조 (기금의 운용관리) ①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,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의 일부를 시금고와의 협약에</p>	<p>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----- 따라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의하여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기금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.</p>	<p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제6조에 따라 ----- -----.</p>
<p>제6조 (기금관리공무원 지정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기금관리공무원 지정) ① - ----- -----<u>각 호</u>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 (위원회 설치)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정비사업업무담당국장이 된다.</p> <p>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</p> <p>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</p>	<p>제7조(기금의심의)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</p> <p>2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</p> <p>3. 보조금 및 용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

현 행	개 정 안
<p>3.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된다</p>	
<p>제8조 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9조 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10조 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.</p> <p>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<u>④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	
<p>제11조 (일비 등) 위원회에 출석한</p> <p><u>위원에 대하여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<삭제></p>
<p>제12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</p> <p><u>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기금운용계획안</u> <u>2. 기금결산보고서안</u> <u>3. 보조금 및 용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</u> <u>4. 기타 기금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	<p><삭제></p>
<p>제13조 (기금운용계획) ①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</u> 3. (생략) 4. <u>기타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 	<p>제13조(기금운용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해당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 -----

현행	개정안
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② 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40일 전까지 ----- -----.</p>
<p>제14조 (기금결산)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기타 기금 결산에 필요한 서류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기금결산) ① ----- ----- 80일 이내 --각 호--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그 밖의 -----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5조 (관련규정의 준용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5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부천시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5조(관련규정의 준용) ① 기금의 관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.</p> <p>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
<p>제1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6조(시행규칙) -----시행에 ----- ----- -----.</p>

<관계 법령발췌서>

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제82조 (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) ①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(이하 "정비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2.6>

②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05.3.18, 2006.5.24, 2008.3.28, 2009.4.22>

1. 도시계획세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
2.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
- 2의2.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
3.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(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)안의 국·공유지 매각대금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
4.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에게 공급된 재건축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
5. 그 밖에 시·도조례가 정하는 재원

③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6.5.24, 2009.2.6>

1.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 - 가. 기본계획의 수립
 - 나.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
 - 다.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
 - 라. 그 밖에 이 법과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
2. 임대주택의 건설·관리
3.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
4.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·징수

④정비기금의 관리·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○ 지방자치법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○ 지방재정법

제34조 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6조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기금은 세계현금(세계현금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채정법」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④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